

2010.11.29 미래정책연구실

※ 본 자료는 지난 11월 25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발표한 “닭·오리 고기 전면 포장유통 실시 등 축산물 위생관리 강화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것임.

□ 주요 내용

- 2011년 1월부터 포장유통의무가 닭·오리 도축업 영업자 전체와 도축된 닭·오리 고기를 보관·운반·판매하는 영업자까지 전면 확대
 - 재래시장 등에서 포장되지 않는 닭을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모든 닭·오리는 포장상태로 유통·판매
- 위생관리상 통제 없이 유통판매 되어 온 식용란(계란)에 대하여 2011년 4월부터는 유통기한을 표시하고 포장 유통
- 닭·오리 도축검사 담당자의 기준 업무량을 연차적으로 선진국 수준까지 개선하는 등 검사 강화
- 새로운 위해요소의 출현과 축산식품 위생관리제도의 변경에 대응하여 도축업, 가공업 등 영업자에 대해 매년 위생교육 실시

□ 축산물위생관리법령 개정 주요 내용

1. 축산물의 포장 의무 확대

- (제·개정 이유) 축산물의 포장 유통을 확대하여 위생수준을 제고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증가
- (제·개정 내용) 닭·오리 도축업 영업자 전체와 닭·오리의 식육을 보관, 운반, 판매하는 영업자들로 포장 의무화 대상 확대 및 축산물판매업 영업자에게 계란 포장 유통 의무 부과
- (입법효과) 닭·오리 식육의 안전성이 제고되고 계란에 대한 위생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

2. 식용란수집판매업 신설

- (제·개정 이유) 계란 소비량 증가에 따라 소비자의 계란 안전성에 관한 요구 확대 혁신적인 개선방안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 현행 「축산물가공처리법」은 식용란의 생산·유통 주체 중 일부(알가공업)에 대해 위생관리 책임 부여
 - (사)한국계란유통협회는 계란유통업에 대한 법제화를 건의
 - 소비자시민모임 등은 식용란(닭·오리·메추리의 알)의 신선도 불량 등을 지적하고 보존·유통기준, 표시 등 제도개선을 요구(09.7)
 - 양계장·계란집하장 및 계란유통상에 대한 위생관리 규제수단 미비
- (제·개정 내용) 계란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식용란수집판매업을 축산물 판매업의 세부영업으로 신설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활동을 하도록 함.
- (입법효과) 계란의 유통 및 판매 전반의 위생관리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

3. 도계장 책임수의사(검사담당자)의 1일 검사업무량 개선

- (제·개정 이유) 현행 규정에 따르면 도축장 자체검사의원의 1일 1인 적정 검사량을 정하지 않고 전년도 검사량에 따라 자체검사원 수만 확보하면 1일 검사량을 제한하지 않아 도축검사 부실 우려가 제기됨 (감사원 통보사항).
 - 현재 가축의 식육은 시·도 검사관이 검사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닭·오리 등의 검사는 도축업체의 책임수의사의 검사로 대신하고 있음.
- (제·개정 내용) 자체검사의원의 기준업무량도 검사관과 동일한 방식으로 정하는 한편 검사에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하여 1인 추가에 따른 검사량 증가분을 현행 4만수에서 2만수로 조정함.
- (입법효과) 검사 업무가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닭·오리 식육 등 축산물의 안전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주간농업·농촌동향 2010 농림어업총조사 실시

※ 본 자료는 11월 24일 농민신문에서 보도된 “2010 농림어업총조사”에 대한 기사내용을 발췌하여 정리한 것임.

□ 2010년 농림어업총조사의 특징('05년과 비교)

- (주요특징) 조사항목이 많이 줄어든 반면, 농림어업 정책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항목 증가
- (조사항목수) ('05) 151개 → ('10) 109개 (42개 ↓)
 - 이미 진행된 인구주택총조사 항목에 포함된 10개 항목(가구주와의 관계, 혼인상태, 교육정도 등)에 대해서는 인구주택총조사 항목을 활용
- (농가 판매대금 기준액) ('05) 50만 원 → ('10) 120만 원
 - 관련법령을 근거로 판매액 상향조정
 - 어가의 판매대금 기준액 신설
- 농가 및 임가 분류방법 개선
 - (기존) 밤·호두·잣·은행·대추 등 5대 유실수는 임가에서만 조사하고 뽕은감 등 일반 임산물 재배업은 농가와 임가 중심으로 조사
 - (개선) 5대 과실수 등 재배 임산물은 농가항목으로 조사
- 농림어업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한 조사항목 신설
 -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 관련 항목) 논벼 물 관리, 논벼 벗짚 관리, 유기 비료 사용 등
 - (친환경 및 삶의 질 항목) 친환경농산물, 친환경축산물, 농어촌 생활편의 시설 등
 - (농림어업 경쟁력 항목) 농림어가의 경영실태, 도·농교류, 생산자 조직 등
- 비슷한 조사의 통폐합

- 과수실태조사(5년 주기) 농림어업총조사에 통폐합
- 벌목량 등 임업 생산량 항목은 연간 임업통계조사로 이관
- 어업임금조사자 가구 부가조사 9개 항목 폐지

□ 조사기간 및 대상

- (조사기간) 2010년 12월 1일~13일(13일 간)
- (조사대상) 조사 대상가구의 정의에 부합되는 전국의 모든 농가·임가·어가 등 약 138만가구 및 3만 6,000개의 행정리
 - (농가-경종) 논 또는 밭 경지면적이 1,000㎡(10a=300평) 이상을 직접 경작하는 가구
 - (농가-축산) 사육하는 가축 평가액이 120만 원 이상인 가구이면서 지난 1년(2009년 12월 1일~2010년 11월 30일) 동안 직접 생산한 농축산물 판매대금이 120만 원 이상인 가구
 - (임가) 현재 산림면적을 3만㎡(3ha=9,000평) 이상 보유하면서 지난 5년(2005년 12월 1일~2010년 11월 30일) 중, 1) 육림작업 실적이 있는 가구, 2) 조림용 묘목 재배업(양묘업)을 경영한 가구, 3) 지난 1년 동안 채취업을 포함해 직접 생산한 임산물 판매대금이 120만 원 이상인 가구
 - (어가) 지난 1년 중, 1) 1개월 이상 판매를 목적으로 어선어업, 맨손어업, 나잠어업, 기타 어로어업, 양식어업을 경영한 가구, 2) 직접 어획하거나 양식한 수산물 판매대금이 연간 120만 원 이상인 가구

□ 조사방식

- (기관) 통계청 주관, 각 지방자치단체 실시
 - (참여인원) 조사인원 1만 7,000여명, 조사관리자 870여명, 총관리자 1,600여명, 업무보조원 1,600명 등 2만 2,000여명의 조사요원 및 공무원 3,000여명
- (농가·임가·어가 조사) 조사원이 직접 가구를 방문하여 조사

- (지역조사) 읍·면에서 이장회의를 소집하여 행정리별로 조사

□ 조사내용

- (공통항목) 가구원의 성명·성별 나이, 농림어업 종사기간, 농림어업 종사 형태, 주 종사 분야, 컴퓨터 보유 및 활용현황·용도, 자동차 보유 여부
- (농업부문) 총 28개 항목(판매대금·경영형태·판매처 등 농업경영과 관련된 항목 8개, 논면적·밭면적·논벼 생산방법 등 농업생산 항목 20개 등)
- (임업부문) 총 7개 항목(산림면적·육림업·판매대금·경영형태 등)
- (어업부문) 총 14개 항목(가구원·어업경영·어업생산 등)
- (지역조사) 총 13개 항목(마을현황, 논관리, 시설 및 도·농교류, 정보화, 단체 현황 등)

□ 활용분야

- 농업·임업·수산업 정책의 기초자료가 되며 농어촌지역 개발계획의 자료로 활용
- 농업조사·양곡소비량조사·농가경제조사·어업조사·어업생산량 통계조사때 농림어업총조사에서 조사된 농림어가를 모집단으로 활용
- 농림어업 또는 농산어촌에 대한 학술연구자료와 국가간 자료 비교에도 활용

※ 2010년 농림어업총조사 조사표는 부록 참고.

부록

2010년 농림어업총조사 조사표

○ 농림어가 조사표

구분	부문	조사항목
농림어업 공통 (11개)	가구원(8)	성명, 성별, 나이, 농림어업 종사기간, 농림어업종사형태, 농림어업 이외 종사기간, 주 종사분야, 경영주 능력
	컴퓨터 및 자동차 보유(3)	컴퓨터 보유/활용 현황, 컴퓨터 활용용도, 자동차 보유
농업 부문 (28개)	농업경영(8)	판매금액, 경영형태, 판매처, 생산자조직 참여, 농업 관련 사업, 농업고용, 농기계보유, 전·겸업
	농업생산(20)	논면적, 밭면적, 논벼 수확면적, 논벼 농사방법, 논벼 물관리, 논벼 밭질 처리, 논벼 유기비료, 식량작물, 채소/특용/화초/기타, 산나물/양육/관상/표고, 시설 면적, 시설작물, 주요 과수 및 재배시설, 주요 과수 재배면적, 기타 과수, 시/군/구 작물, 친환경작물, 가축, 가축분뇨 처리, 목초지
임업 부문 (7개)	임업 생산 및 경영	산림면적, 육림업, 벌목업 및 양묘업, 채취업, 판매금액, 경영형태, 판매처
어업 부문 (14개)	가구원(1)	어업 주 종사 부문
	어업경영(8)	판매금액, 경영형태, 판매처, 판매형태, 생산자조직 참여, 어업 관련 사업, 어업고용, 전·겸업
	어업생산(5)	보유 어선, 동력선, 어법 종류, 어획품종, 양식품종

○ 지역 조사표

구분	부문	조사항목
농림어업 공통 (11개)	마을현황(4)	소재지 마을, 자연마을, 대중교통 이용, 쓰레기 처리
	논관리(2)	모내기 준비기 물 관리, 수확 이후 논 관리
	시설 및 도·농 교류(3)	생활편의시설, 농림어업 관련 시설, 도·농교류
	정보화 및 단체 현황(4)	홈페이지 개설, 홈페이지 활용 용도, 농림어업법인, 어촌계/산림계/작목반